

평창군세감면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 8.29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. 8.
- 다. 상정일자 : 2002. 8.30 제9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지난 8.5 ~ 8.7 우리군에 많은 비가 내려 농경지 유실·매몰등 피해가 발생되어 수해피해 주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도움을 주고자함

3. 주 요 결 자

- 수해대상 : 518농가 951,106㎡
- 감면세액(종합토지세) : 12,387,830원

4. 검 토 결 과

- 감면근거
 - 지방세법 제9조의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·지변·화재, 기타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한 후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.
-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평창군수가 관내의 집중호우(8.5~ 8.7)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 하였으며

그 조사결과 농경이 유실·매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에게 종합토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.

○ 감면기준

- 피해면적 : 330㎡이상 피해가구
- 감면기준 : 종합토지세 50,000원 이하가구는 전액
종합토지세 50,000원 이상가구는 50,000원 정액

○ 읍면별 감면내역

읍 면 별	인 원	면 적	세 액
계	518	951,106	12,387,830
평 창 읍	119	217,161	2,185,220
미 탄 면	21	31,230	287,150
방 립 면	85	199,776	1,544,950
대 화 면	76	133,013	1,517,720
봉 평 면	27	42,728	746,690
용 평 면	31	38,591	897,340
진 부 면	113	155,273	3,420,630
도 암 면	46	133,334	1,788,130